

#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719
----------	-----

2022. 4. 25.  
자치행정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가.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권이 축소되는 경우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심사해야 할 의회 고유의 역할이 제한될 수 밖에 없으므로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확인과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해 의회 동의 사유 예외 조항 일부를 삭제하기로 함.

## 2. 주요골자

가. 안 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 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1. 위탁기관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”

“2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”

나. 수정한 부분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.

##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 제3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1. 위탁기관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”

“2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”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원       안	수       정       안
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	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1. <u>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로 정한경우</u>	1. <u>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</u>
2. <u>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</u>	2. <u>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</u>
3. <u>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</u>	우